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명	한 글	최 병 혁	일본명	
	한 자	崔 丙 赫	이 명	
출생 연월일	1878년 9월 24일		사망 연월일	1920년 8월 15일
본 적	黃海道 海州郡 州內面 東部 三里(1907년 주소)			

주요 경력	
1904년 이전	
1878.9.24	출생 (敍勳 卷3, 內國人3, 1920)
1902.10.30	황해도관찰부 주사(판임관6등) (관보, 1902년 11월 1일)
1904년 ~ 1945년	
1904.4.30	판임관5등 (관보, 1904년 6월 2일)
1905.11.24	판임관4등 (관보, 1905년 11월 28일)
1906.11.26	황해도관찰도 주사 (관보, 1906년 12월 6일)
1907.6.14	탁지부 세무관(주임관4등) (관보, 1907년 6월 17일)
1908.1.1	재무서 재무관 (敍勳 卷3, 內國人3, 1920)
1908.12.31	평양재무서 재무관(주임관3등) (같은 자료; 관보, 1910년 1월 4일)
1909.12.25	의주재무서장 (관보, 1910년 1월 4일)
1911.1.18	조선총독부 군서기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1월 19일)
1911.9.28	황해도 신계군수(고등관8등)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10월 3일, 10월 4일)
1911.12.11	신계군수(정8위)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12월 16일)
1912.8.1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받음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6월 10일[부록])
1913.2.21	황해도 금천군수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2월 27일)

	1914.6.30	금천군수(고등관7등)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7월 8일)
	1914.9.21	금천군수(종7위)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9월 28일)
	1915.11.10	일본정부로부터 대례기념장 받음 (敍勳 卷3, 內國人3, 1920)
	1916.11.1~1917.7.10	황해도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11월 7일, 1917년 7월 18일)
	1917.10.27	황해도 은율군수 (조선총독부관보, 1917년 10월 30일)
	1919.6.30	은율군수(고등관6등)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7월 17일)
	1919.9.10	은율군수(정7위)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9월 16일)
	1920.8.15	대한독립단원에게 피살됨 일본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 받음(종6위, 3급봉) (敍勳 卷3, 內國人3, 1920; 조선총독부관보, 1920년 8월 24일, 8월 30일, 9월 8일)
	1920. 8.24	特旨로 위1급 추승 (조선총독부관보, 1920년 8월 30일)

조 사 내 용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9호(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일본정부로부터 훈포상을 받은 행위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6월 10일(부록).

1912년 8월 1일 조선총독부 신계군수 **최병혁**은 <명치 45년 칙령 제56호>에 의거하여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朝鮮總督府郡守崔丙赫敍勳ノ件」,『敍勳』 卷3, 內國人3, 1920.

*「履歷書」

1915년 11월 10일 일본정부로부터 일왕 다이쇼[大正]의 즉위식 관련 대례기념장을 받음.

*「賞勳局上申第259號」

"大正9年 8月 28日

內閣總理大臣

賞勳局總裁

조선총독부군수 종6위 **최병혁**은 1906년 2월 통감부 사무 개시 당시 황해도 관찰부 주사 직에 있은 이래 여러 관직을 거쳐 1908년 1월 재무서 재무관에 임명되었고 1910년 9월 폐관되었다가 다음 해 1911년 1월 조선총독부 서기로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9월 다시 현관으로 승진되어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함으로써 금일에 이른 자로 본월[1920년 8월 - 작성자] 15일 배일불령선인에 의해 총살되었습니다. 이에 특별히 훈6등에 서하고 서보장을 수여했으면 하오니 이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건은 본월 15일부로 시행했으면 하오니 이를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人秘 第1677號」

"故朝鮮總督府郡守 正7位 **崔丙赫**

위 사람은 1920년 8월 15일 배일불령선인에 의해 총살되었는데 사정이 참으로 딱합니다. 동인은 1902년 10월 황해도 관찰부 주사에 임명된 이래 동도 관찰도 주사 및 탁지부 세무관 등 여러 관직을 거쳐 1908년 1월 재무서 재무관을 역임했습니다.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 시행에 의해 같은 해 9월 일시적으로 폐관되었다가 1911년 1월 조선총독부 군서기에 임명되었고, 9월 조선총독부 군수로 승진하여 오늘에 이른 자입니다. 그동안 맡은 일에 정성으로 힘써 직무를 다하여 다년간의 공로가 진실로 감출래야 감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직무에 목숨을 바친 자로 인정됩니다. 이에 특히 생전의 날짜로 별지 인명부대로 서훈되도록 심의되었으면 하여 이력서를 갖추어 이와 같이 품신합니다.

1920년 8월 17일

朝鮮總督府男爵 齋藤實

內閣總理大臣 原敬 殿"

▶『조선총독부관보』, 1920년 8월 30일.
1920년 8월 15일 일본정부에 의해 종6위에 서위됨.
1920년 8월 24일 일본정부에 의해 特旨로 위1급 추승됨.

▶『조선총독부관보』, 1920년 9월 8일.
1920년 8월 15일 일본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을 받음.

2) 3·1운동 등 독립운동을 방해한 행위

▶『독립운동사 제2권: 삼일운동사(상)』, 국가보훈처, 1971, 306쪽.
"은율읍내에서 제1차 만세시위가 있은 것은 3월 26일 이었다. (중략) 일은 크게 벌어졌다. 주재소의 순사만으로는 대책이 없었다. 적측은 장연경찰서에 긴급 연락하고 송화헌병대에도 응원을 청하였다. 한편 군수 **최병혁** 등은 몰염치하게 군중들이 모인 장터로 나와서, 독립운동은 天時를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민중들을 진정을 요망하는 연설을 하였다. 애국 동포들 중에는 분을 참지 못하여 친일파들에게 대들 기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 장연경찰서의 경찰대와 송화읍헌병대가 읍내로 모여들며 읍내는 어수선하여졌다. 적들은 총칼을 휘두르며 민중들의 해산을 외쳤다. 형세가 불리하여지자 시민들은 흩어지기 시작하고 주동 인물들도 몸을 감추었다. 만세소리는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들리고 군중들은 흩어지니 일은 진정이 된 셈이다. 이 통에 적의 휘두르는 창칼에 몇 사람의 부상자도 생겼다."

▶ 李炳憲 編著,『三·一運動秘史』, 時事時報社出版局, 1959, 960쪽.
"1920년 8월 15일 밤 자정에 은율군수 **최병혁**은 자기집에서 독립단에게 총살을 당하였다. 독립단원 중 1인이 체포되었는데 서울지방법원 검사가 당지에 출장하여 검시하였다. **최 군수**는 군민에게 독립운동은 천시를 모른다고 하면서 경찰을 앞세워 만세 부른 사람을 박해하였다."

▶『동아일보』, 1921년 7월 20일 3면, 「은율군수를 사살한 독립단원 예심결정(1) - 해주지방법원」.

"[독립단원 이지표와 민양기는 - 작성자] 음 6월 27일경 대동강을 건너 황해도에 들어와 다음 28일 은율군 장연면 서부리 피고 황윤상 측에 도착하여 (중략) 군수 **최병혁** 및 참사 고학윤은 친일파로써 독립운동 방해자이므로 우선 이를 암살할 취지를 교사하여 (중략) 은율지방에서 독립운동 자금모집을 용이케 하려고 그들을 살해할 뜻을 결의하고 드디어 같은 해 7월 2일(양 8월 15일) 일몰 후 (중략) 이지표는 홍원율의 안내로 은율군수 **최병혁**을, 고두환은 김영섭의 안내로 읍내 고학윤을 각각 사살하기로 하고 (중략) 일몰 후 11시경 이지표는 군수 **최병혁** 주택 담장을 넘어 방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한 단총으로 방에 있던 동인을 저격하여 오른쪽 가슴을 명중 즉사케 하고 (후략)"

【참고사항】 이지표의 독립유공자 공훈기록

- 출전: 국가보훈처 편,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3권, 361~363쪽.

이지표는 1920년 대한독립단에 가입한 뒤 황해도 지역에서 군자금 모집과 친일파 처단의 임무를 띠고 활동하던 중 8월 15일 친일군수 **최병혁**을 사살하였다. 같은 해 9월 구월산에서 유격전을 전개하려던 계획을 수립하던 중 일본 경찰의 습격을 받아 전사하였다. 1995년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관 다

최병혁은 대한제국 시기인 1902년 10월 황해도 관찰부 주사로 재직한 뒤 통감부시기에도 승진을 거듭하였다. 대한제국 정부의 관리로 재직 중에 일본의 한국병합을 수용하고 병합 이후 계속해서 1911년 1월 조선총독부 군서기, 같은 해 9월 신계군수를 거쳐 1913년 2월 금천군수가 되었고, 1917년 10월부터 1920년 8월 15일 사망할 때까지 은율군수를 지냈다. 조선총독부 황해도 신계군수로 재직 중이던 1912년 8월 1일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금천군수로 재직 중이

던 1915년 11월 10일 일왕 다이쇼[大正]의 즉위식 관련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최병혁은 1916년 11월 1일부터 1917년 7월 10일까지 황해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으로서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에 협력하였다. 지방토지조사위원회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소유권 분쟁 심의를 담당한 '분쟁지심사위원회'의 자문기구적 성격을 지니는 기구로서 분쟁지심사위원회의 자문 요청 원안을 대부분 그대로 통과시키는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여 소유권 회복을 위한 한국인 농민의 이의 제기는 거의 기각되었다.

1919년 3·1운동이 발생하자 3월 26일 황해도 은율읍내의 장터에 직접 나가서 경찰을 앞세워 은율군민의 독립만세운동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병혁**은 대한독립단에 의해 독립운동을 방해한 친일파 군수로 지목되었고, 1920년 8월 15일 독립단원 이지표(李芝杓)에 의해 총살되었다. 사망 직후 조선총독은 식민통치에 대해 적극 협력한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상훈을 신청하였고, 일본정부는 1920년 8월 15일자로 훈6등 서보장을 수여하였다.

최병혁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9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병혁**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2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